

언론의 직업윤리와 언론중재제도

유재천

서강대 신방과 교수·중재위원

우리나라 언론은 1987년 6·29 선언과 같은 해 11월 28일에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이 공포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언론에 일어난 변화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론자유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나머지 하나는 언론매체의 양적 팽창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또 언론매체가 양적인 팽창을 이룬데 견주어 과연 우리 언론이 얼마나 공적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정치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사회적 공기로써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언론매체의 양적 팽창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이같은 의문은 오늘의 우리 언론이 얼마나 언론의 직업윤리에 충실한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언론자유는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포괄적이다. 즉 현대적 의미의 언론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라는 고전적 언론자유와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권, 신문이나 방송 및 잡지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당해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 설립권(고전적 의미의 발행권), 언론기관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 및 논평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급의 자유 등은 물론 편집 또는 편성의 자유와 같은 언론기관의 내적 자유 등이 모두 언론자유를 이룬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자유권이나 청구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기본권이나 사회적 공익을 침해할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허가제와 사전검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비상사태일 경우에는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첫째, 언론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둘째, 언론은 공정해야만 한다

셋째, 언론은 정확해야만 한다.

넷째, 언론은 인권을 존중하여야만 한다.

다섯째, 언론은 품위가 있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조건은 책임 있는 언론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이기도 하다.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은 언론의 첫번째 원칙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언론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언론의 부정확성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비의도적인 불정확성으로, 시간에 쫓기는 제작과정과 언론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초래되는 부정확성을 들 수 있다. 문자의 오식, 편집상의 잘못, 미확인에 의한 오류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의도적인 불정확성이다. 이것은 선정적인 보도를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를 조작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편견이나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등에 의해 초래되는 부정확성을 말한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과 관련해 볼 때 부정확성의 문제는 정정기사의 게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정확성의 문제는 가능한 한 오보율을 최소화하려는 언론의 노력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언론의 활동 과정상 오보를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언론은 오보가 발생한 즉시 정정기사를 내주어 야만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뜻이다.

언론과 인권의 문제는 언론에 의해 일어나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언론의 책임문제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1)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2)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언론중재위원회로서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한 조정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중재위원회의 이같은 직무는 언론과 피해자간의 사법적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법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에 요구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독립성 및 중립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강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언론이 보도에

의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신설한 데 의의가 있다.

이같은 중재제도는 언론자유를 언론매체로 보기 보다는 국민 혹은 공중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접근권의 일부를 입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구미에서 일찍부터 시행해 온 불만처리제도의 도입이라 하겠다. 그러나 불만처리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언론계와 공공의 자율적 기관에 의해 정착된 데 반해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제도라고 하겠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건에 따라 언론중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기간행물들이 많이 출현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불만처리사유가 증대할 것이며, 둘째 언론기관의 급격한 팽창으로 전문 직업적 훈련이 부족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언론인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권리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여건이 형성되고 있고, 셋째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넷째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자구의식과 세력이 확산되는 시대적 추세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예컨대 언론인들의 윤리의식의 결여, 언론사들의 비협조적 태도, 언론의 전문성 결여, 언론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체념, 우리사회의 권리의식의 결렬, 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인해 언론중재제도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의 직업적 윤리수준을 제고시키고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익의 구제를 통한 인권의 옹호를 위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졸,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매스컴 전공)
- 저술 : 「한국의 언론」 (1968. 공저), 「현대 사회와 대중문화」 (1975. 공저), 「인류의 미래상」 (역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외
- 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991 년도 지방토론회(제주편)

토론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 주었으면

사회자(강윤호, 중재위원) :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유재천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언론보도와 윤리문제, 언론침해구제제도 일반에 대하여 의견진술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제주도 여성회관 관장) : 언론인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재를 할 때에는 그냥 전화로 문의하지 말고 현장감있게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선(제주도지 방공무원교육원장) : 공직에 있다보니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이 불공정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나 도정에 관한 사항을 잘못 보도하게 되면 도민들은 그것을 사실인양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도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은 인책을 받게 되어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중재신청등을 통해 피해나 명예를 회복하려 해도 공직에 있다는 점, 당해 언론사의 위상이나 신문기자의 신분상의 문제, 또 행여 있을지도 모를 언론사의 보복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저하게 됩니다.

오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신문사간의 과당 경쟁, 특종의식, 마감시간 등이 그러한 이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생명인 공정성, 정확성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서나 진정서에 근거하여 보도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상대방의 의견도 취재해서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자들의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유재천 위원) : 취재시에 기자들이 현장감 있게 발로 뛰어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기자들이 왜 오보를 많이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자 자신들은 취재원에 대해 불충분한 접촉을 했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발로 뛰어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자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은 마감시간과 자신들의 능력부족 항목입니다. 그리고 신문사간의 과당경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들을 보면 자신들 스스로가 굉장한 정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아사히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사내에 독자홍보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편집국내의 기구가 아니라 사장직속부서입니다. 대개 부장급의 경력을 가진 중견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서는, 독자들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청취하여 피해구제를 해줍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신문과 같이 지방지에서조차 이러한 부서를 두고 피해구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부서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서를 두어 스스로가 직업윤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언론의 관행을 보면 공정치 못한 보도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우선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직업적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언론인 스스로의 재교육을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양철호(제주지방법무사회 회장) : 언론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당연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겠지만, 사실을 보도했음지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보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면책이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정정해 주는 풍토 조성해 나가야

강대원(서원모래주식회사 대표이사) : 활자의 오식에 대해 법적인 한계가 애매한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편집시에 오식을 하여 중대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문제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일반원칙을 세밀하게 정해 두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식과 관련해서는 동아, 조선 두 신문이 며칠씩 정간을 당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오식하여 이승만 대령, 견통령이라고 보도되어 수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는 판례가 거의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가이신 현순도 부장판사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순도(제주중재부장,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오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과실에 의해 본의 아니게 이뤄진 것입니다. 예컨대, 현순도라고 표기하여야 할 것을 현순경으로 오식하여 마치 현순경이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보도되었다면, 현순경이라는 사람은 신문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법률상 고의범에 한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법률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목(한라일보 편집국장) :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불가결하며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책임 또는 의무도 중요하다는 유교수의 말씀에 100%공감합니다. 쓰기에 좋다고 해서 상대방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일은 절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약 10여년 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 은행지점장이 부정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그 지점장은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정대출보도가 허위였다는 것일 밝혀지자 아사히 신문의 편집위원은 문예춘추라는 월간지에 자신들의 기사가 살인을 했다는 내용의 기고를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모든 언론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는 데 인색한 이유는, 우리의 언론발달사 자체가 일제나

국내정치권력과의 투쟁사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통때문에 언론의 성격이 상당히 독선적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제는 과감히 정정을 해주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당사자 자신들도 언론중재위원회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시수(제주도 과학교육원장) : 저는 언론인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분야등과 같이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의 담당기자는 정치, 사회, 문화, 체육 등의 담당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행 기자채용제도를 보면 전문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정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채용후 전문지식 갱출 수 있도록 재훈련하는 프로그램 필요

이문교(제주문화방송 보도국장) :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면 언론조작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작의 주체는 정부권력일 수도 있고 이익집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조작의 문제는 취재원 접근이 불확실한 데서 오는 비의도적 오보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조작의 배후와는 상관없이 오보를 낸 언론사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는 조작주체나 그 배후세력에게까지 책임을 지우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간지나 월간지의 경우 「공표된 날」로 부터 한달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표된 날」이라는 것이 잡지에 표기된 발행일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행된 날 기준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 먼저, 기자의 전문성 결여 내지 전문지식의 결여 때문에 나타나는 오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언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채용 후 전문지식을 갱출 수 있도록 재훈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자 채용때부터 전문영역을 전공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언론조작에 의한 오보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조작주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누가 어떻게 언론조작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언론조작에 의한 비의도적 오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자유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각 이익단체들에서 제공하는 통조림기사에 대해 언론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도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고도의 홍보나 광고 전략으로써 보도자료를 보낼 때, 기자들이 받아먹기 쉽도록 기사 스타일로 작성 배포합니다 기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 취재하여 보도해야만 정보조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재신청기간의 기산일 문제는 책에 명기된 발행일 기준이라고 보는데 자세한

것은 사무총장께 부탁드립니다.

김해도(사무총장) ; 잡지의 경우에는 책에 표기된 발행일과 실제 책이 발행된 날이 서로 틀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에 명기된 날보다 앞서서 시중에 배포됩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실제 공표된 날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에 표시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종(제주도교육연구원 연구관) : 투서나 진정서에 근거해 보도할 경우에는 기자들이 그 사실 내용의 진위 여부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잘 판단하여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기사에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면 기사 대부분이 사건·사고기사로 채워지고 있어

김공빈(도로교통안전협회 제주도 지부장) : 국내언론의 사회면기사 대부분은 사건·사고기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의 경영측면 때문에 보다 상업성이 강한 흥미위주의 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사회가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건사고 기사를 읽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 유의하여 우리 언론이 사회면 편집방향을 바꿀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표자 : 우리 신문의 사회면에 사건·사고기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언론현업인과 언론학자가 함께 모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 역시 사건 기사를 줄여야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자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굳이 결론을 내린다면 언론의 책임 내지 윤리의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3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언론과 수용자가 함께 모여 보다 나은 언론, 윤리 및 책임성이 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자리였다고 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주지방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